###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1677

제출연월일 : 2024. 7. 12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범위 확대를 통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을 추가하고,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 외교습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7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3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34조의3 단서 중 "「사립학교법」 제53조의3"을 "「사립학교법」 제53조의4"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는 행위
- 2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취업(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행위
- 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를 설립하는 행위
- 4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
- 5.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 거나 이에 취업하는 행위

제6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

-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2. 제34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    - 가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한 행위(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 학원을 설립한 경우로한정한다)
    - 나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학원에 취업(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행위
    - 다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를 설립한 행위(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교습소를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)
    - 라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한 행위(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과외교습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)
    - 마.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한 행위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관하여는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했 제34조의3(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34조의3(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)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제한)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「학원의 설립・ 이후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행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위를 할 수 없다. -----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,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. 다만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「사립학교법」 제53조의3에 따 「사립학교법」 제53조의4----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 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「학원의 설립・운영 및 과 <신 설> 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 는 행위 2. 「학원의 설립・운영 및 과 <신 설> 외교습에 관한 법률 |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 취업(법 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)하는 행위 <신 설> 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 <신 설>

<u><신</u> 설>

제64조(벌칙) ① • 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.
- 1. (생략)

<신 설>

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를 설립하는 행위

- 4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 는 행위
- 5.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행 위

제64조(벌칙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\_\_\_\_\_

----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제34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  - 가. 「학원의 설립・운영 및

    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

    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

     설립한 행위(거짓이나 그

  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

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 학원을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)

나. 「학원의 설립・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취업(법인의 임원이 되는경우를 포함한다)한 행위

다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
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
를 설립한 행위(거짓이나
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
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
른 신고를 하여 교습소를
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)

라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
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한 행위(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과외교습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)
마.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

	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		
	취업한 행위		
<u>2</u> . ∼ <u>4</u> . (생 략)	<u>3</u> . ∼ <u>5</u> .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		
	까지와 같음)		